

## 제8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 제8.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 내 주재, 그리고
- 마.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채권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재정적 담보의 제공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나. 중앙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제10.19조(정의)에 정의된 금융서비스

나. 정부조달

다.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1)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않는 기간 중 그 항공기의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4) 특수 항공 서비스
- 5) 지상 조업 서비스, 그리고
- 6) 공항 운영 서비스, 또는

라.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4. 이 장은 당사국에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5.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 제8.2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sup>1</sup>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 제8.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 제8.4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동종의 상황” 에서 대우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관련 대우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기초하여 서비스들 간 또는 서비스 공급자들 간의 구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 상황에 달려있다.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sup>2</sup>,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 제8.5조

####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여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 제8.6조

#### 비합치 조치

1.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

<sup>2</sup> 가호3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지방정부<sup>3</sup>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8.2조, 제8.3조, 제8.4조 또는 제8.5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8.2조부터 제8.5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제8.7조

#### 국내 규제

1.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

<sup>3</sup>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당사국이 제2항가호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그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련 국제기구<sup>4</sup>의 국제표준이 고려된다.

4. 당사국이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을 하도록 보장한다.

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여겨지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나.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의 처리를 위한 예시적 기간을 수립한다.

다.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불완전한 신청의 경우 그리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행 가능한 경우, 신청을 완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모든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한다.

마. 신청이 종료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가능한 최대의 한도에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요청에 따라 그리고 과도한 지체 없이, 그러한 처분의 이유를 제공한다. 거부하는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청인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새로운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한도에서, 면허 또는 자격에 대한 신청을 제출하기 위하여 당사국 영역에서의 물리적 주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사.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서면 제출과 진정성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전자적 형식의 신청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sup>4</sup> “관련 국제기구”란 양 당사국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아.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원본 문서를 대신하여 당사국의 법에 따라 증명된 문서의 사본을 수용한다.

5.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부과하는 모든 승인 수수료<sup>5</sup>가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그 자체로 관련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6. 면허 또는 자격 요건에 시험의 완료가 포함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가. 합리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시험 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나.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한다.

7. 분야 또는 조치가 제8.6조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을 이유로 제8.2조 또는 제8.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그러한 분야 또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8. GATS 제6조제4항과 관련된 협상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협상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발효하도록 양 당사국 간의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를 개정한다.<sup>6</sup>

## 제8.8조

### 규정<sup>7</sup>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19장(투명성)에 더하여,

---

<sup>5</sup> 이 항의 목적상, 승인 수수료는 천연자원의 사용에 대한 수수료, 경매, 입찰 또는 허가를 부여하는 그 밖의 비차별적인 수단에 대한 지불, 또는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무적 출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sup>6</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7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밖의 포럼에서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입장을 저해하지 않는다.

<sup>7</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수립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립하거나 유지한다.<sup>8</sup>
- 나. 당사국이 제19.1조제2항에 합치되게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하여 채택을 제안하는 규정에 대한 사전공고 및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한다.
- 다.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포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

## 제8.9조

###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5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8.3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 또는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자국 또는 자국 영역 내 관련 기관이

---

<sup>8</sup>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수립하는 의무의 이행은 소규모 행정 기관의 자원 및 예산 제약의 고려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체결한 모든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하여도 적절한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 제8.10조

#### 지불 및 송금<sup>9</sup>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련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공급에 관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

<sup>9</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8-가는 제8.10조에 적용된다.

- 다. 법 집행 또는 금융 규제 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 라. 형사범죄, 또는
  
-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 제8.11조 혜택의 부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기업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이 그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아는 경우, 혜택부인 당사국은 혜택을 부인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이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통보한다.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러한 통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 제8.12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공항 운영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 터미널, 비행장 및 그 밖의 공항 시설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운영 서비스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이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기업” 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지상 조업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에서 다음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사 대리·관리 및 감독, 여객 취급, 수하물 취급, 램프 서비스, 음식 준비를 제외한 케이터링, 항공 화물 및 우편물 취급, 항공기 연료 공급, 항공기 정비 및 청소, 육상 운송, 그리고 비행 운영·승무원 관리 및 비행 계획. 지상 조업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자체 처리, 보안, 라인 정비, 항공기 보수 및 유지, 또는 제빙 시설, 연료 배급 시스템, 수하물 취급 시스템 및 공항 내 고정 교통 시스템과 같은 필수적인 중앙 집중식 공항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어떤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sup>10</sup> 그리고

특수 항공 서비스란 항공화재진압, 관광, 살포, 조사, 지도제작, 사진촬영, 낙하산 투하, 글라이더 견인, 그리고 벌채 및 건설을 위한 헬기운반과 같은 비운송 항공서비스, 그리고 그 밖의 공중에서의 농업, 산업 및 조사 서비스를 말한다.

---

<sup>10</sup> 제8.2조 및 제8.3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 는 GATS 제2조 및 제17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 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부속서 8-가

### 송금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경우 당사국이 지급 및 자본 이동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임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지급 및 자본 이동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조치의 적용 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구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연장을 사전에 통보한다.

나. 「국제통화기금협정」과 합치한다(이하 “IMF”라 한다).

다.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 일시적이며, 제1항에 기술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마. 몰수적이지 않다.

바.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지된다.

사. 내국민 대우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 아. 다른 쪽 당사국이 비당사국만큼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 자.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않는다.
- 차. 그러한 조치의 부과가 IMF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지 않는 한, 경상거래에 대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리고
- 카. 외국인직접투자자와 연계된 해외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않는다.<sup>11</sup>

3. 이 부속서의 목적상, **외국인직접투자**란 다음을 위한 한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말하며, 대외채권은 제외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에 기업 설립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기존의 기업의 증자, 또는
- 나. 다른 쪽 당사국의 기존의 기업의 지분 취득. 다만, 순전히 금융적 성격을 지니며,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시장에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목적만을 가진 투자는 제외한다.

---

<sup>1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IMF에 따라 국제 자본 이동을 규제하는 데 필요한 자본 유입 송금에 대한 모든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는 그러한 거래 금액의 일부를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통제를 포함할 수 있다.